

#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特殊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2  
568-5595~6  
FAX. 568-6653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會訓

- 創 意
- 奉 仕
- 誠 實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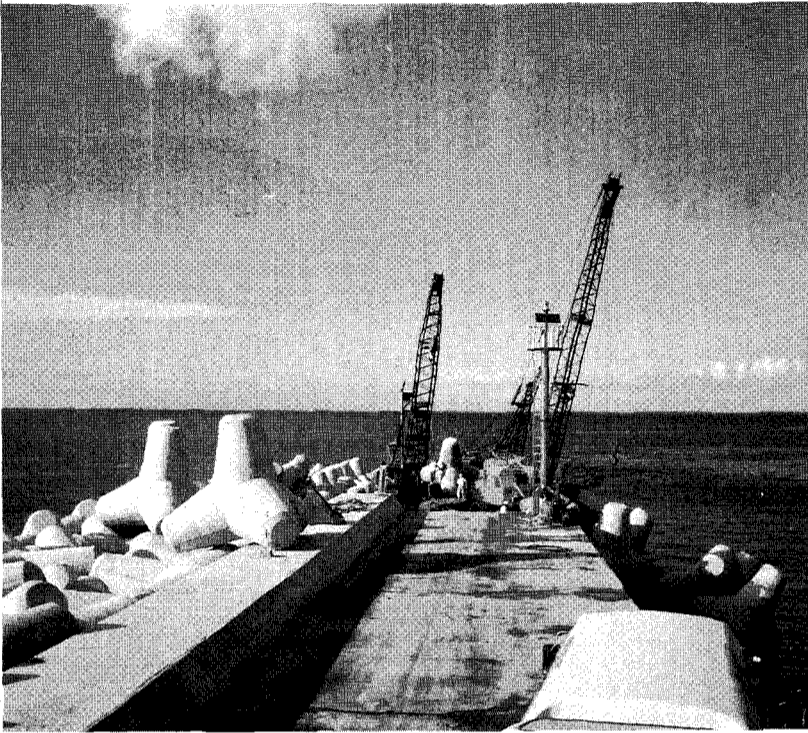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 을 漁港工事 마무리 段階

# 修築사업등 40개항 竣工 竣 人力難·혹서등 難關 극복

## 어항 不實豫防策 시달

### 군열·沈下 사전調査등 明年 사업準備도



漁港시설관리도 徹底 수산청은 최근 건설공사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어항공사에도 부실예방 대책을 마련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 不實공사 追放의 海 맞아 品質관리에 注力

올해 수산청 어항공사 품질관리로 진척, 계획대로 94년 가 예산에 비해 순조로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 어항수출사업 36개항

## 漁港시설 안전관리 綜合對策을 마련

### 수산청 特殊공사監理 전문기관에 의뢰

수산청 어항시설물의 대한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완벽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그 동안 어항공사의 시설계획 및 공사기법을 모두 관계 기술위원회의 의해 수행 되어 왔으나 95년부터는 8백만원의 확대하여 4천 수백만원에 달하게 하는 공 사나 규모가 큰 공사는 전문 기술위원회의 의뢰로 실시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편, 각 공사시와 시공기법을 강

## 어항관리실태조사

### 廢船등 적발 환경개선도모

수산청이 11월14일부터 25일까지 동해, 남해, 서해 등 3개 조사반을 편성, 어항시설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어항에 폐선 폐어망 기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어항환경의 저해는 물론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어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산청은 어항관리와 관련하여 어민의 안전을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지난해 말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자율성향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PQ부대입찰공사

## 55억 이상으로 확대

PQ대상공사와 부대입찰대상공사가 현행 1백억원 이상에서 55억원 이상으로 14개공종에서 18개공종으로 각각 확대되고 1백억원 이상 주요공종 중의 대대적인 최저가격 추경이 예상된다. 수주 등 최저가격추경의 부작을 개선, 건설시공 현장 안전과 건설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투쟁을 유도, 경쟁상태와

## 施設物 유지관리업 新設기로 建設部

앞으로 시설물 공자는 하 자담보책임 기간내의 무적으로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 하는 등 하 자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 야 하며 하 자책임기간 만료후 시설물유지관 리를 전담 할 유지관 리업이 신 설된다. 건설부가 마련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에 따 르면 안전점검 및 유지관 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물 종류를 위생,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 물과 2종시설물로 분류 하고 관리주체를 공영 및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유 의 실시책임도 지도록 하 되 전문기관이나 시설안 전관리업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설물을 관 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 관리업 등을 한 자로 하여 유지관리업 등록 하 고 유지관리업을 등록 하 자는 자기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 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 투쟁하여 1종시설물 중 대용량이므로 정밀안전진단업무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비안전진단기술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관리업에 설립 등록했다.

수산청이 최근 동해, 남해, 서해 등 3개 조사반을 편성, 어항시설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어항에 폐선 폐어망 기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어항환경의 저해는 물론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어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산청은 어항관리와 관련하여 어민의 안전을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지난해 말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자율성향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산청이 어항시설물의 대한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완벽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그 동안 어항공사의 시설계획 및 공사기법을 모두 관계 기술위원회의 의해 수행 되어 왔으나 95년부터는 8백만원의 확대하여 4천 수백만원에 달하게 하는 공 사나 규모가 큰 공사는 전문 기술위원회의 의뢰로 실시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편, 각 공사시와 시공기법을 강

## 最適格 입찰제 公共工種에 적용

조달청이 응찰사의 중 나찰사를 결정하는 최저적 우선 내년부터 지하철교 조달청의 응찰사를 평가, 입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각종 공공공사가 4개공

# 때 맞춘 漁港공사 不實豫防 對策

## 堅實施工 다지는 契機

## 마련

우리에게 성수 대교 붕괴 사고는 1967년 미국의 오키아주에 서는 실버리지가 붕괴, 수십 대의 승용차가 불속으로 곤두

지난 1987년 완공을 눈앞 에 둔 신(新) 나가사키 어항이 두동강 나버린 사고도 있지 않 았는가.

70년대 후반에서도 한 아치고 붕괴 사고가 있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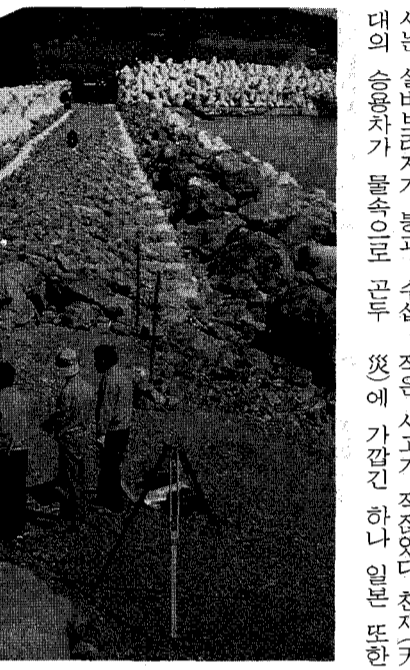
다만 한가지 꼭 기억하고 책 임져야 할 사항은 이러한 대책 이 때만 큰 사고가 있을 때만

다. 우리 어항인 모두는 새로 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선 으로서 태어나 무장하지 않 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삼 자제를 가다듬어 야 한다.

### 事故가능성 例示 被害예방에 徹底

성수대교 붕괴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총체적 수준을 드러 내버린 뼈아픈 사고였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충격은 단순히 교량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건설한국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불관(突貫)' '공기 단축'의 신화가 부실로 인한 적체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데 있었다.

우리에게 성수 대교 붕괴 사고는 비로소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알려 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나 라의 사고 수습 자세이다. 이들 나라는 사고가 발생하자 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공사 부 실예방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차에 어항인들에게도 당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름아 니 이번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어항인들 역시 중 등 부문을 요소요소의 부실과 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이 앞 서 말한 후주의 경우와 매우

현대는 첨단과학정보시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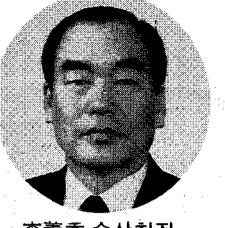
1979년 영국의 스키틀랜드에서는 테이 철교가 붕괴돼 지나가던 열차가 불속으로 추 뒤돌아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자 사전사후 부실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 70년대 이후부터 는 이번 종류의 사고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것이었고 말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어항공사를 재검토 , 조사부문, 계획부문, 실시부

현대는 첨단과학정보시대가

정도로 우리 어항업체만큼은 부실없는 완벽한 건설 시공이 되도록 건설부문의 모범이 되 겠다는 각오를 새삼 굳게 다져 야 할 일이다.



李義秀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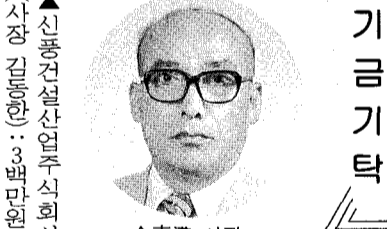


孫井權 한국어항협회장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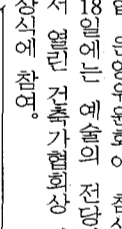


金東煥 사장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金東煥 사장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金東煥 사장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이희수 수산청장인 11월 3일 가나에 방문하여 열 린 월해수산업 시장시에 참석하고 수산자문위원 격

# 不正 하도금 實態 조사

## 不當 금액 · 支給 지연 先給金 미지급등 대상

### 公正去來委 常習者고발조치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예발처음에서 불합당 하도금 및 불법하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설부와 합동으로 착수했다.

하도금 및 불법하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설부와 합동으로 착수했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의 원인으로 설계, 감리, 감독의 낮은 기술수준이 지적되고 있다. 하도금과 정에서도 상당한 부실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불합당 및 불법 하도금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및 투자기관의 발주한 1백여건의 이상의 지하철거, 스코프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및 지급지연, 물품 구매 강제, 선납금 미지급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거나 정당한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요청 및 고발조치키로 했다.

## 制裁누적면 免許취소

### 主要工種 50억원미만도 責任監理

경미한 제재라도 이를 자주 받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부실감리업체와 부실설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공사감리자의 설계내역 검토가 의무화되고 예비준공검사도 수검 보완키로 했다.

수검내역에 따르면 경미한 제재라도 이를 자주 받으면 면허취소, 기술훈격지정 취소, 경고처분 업무정지 자격취소 등 가중처벌 조치를 취하고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6개월내에서 1년내로 연장하기로 부실감리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이하로 강화되며 부실설계자에 대해서도 부실감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리자에 대한 교육수기를 매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육미수자는 현장배치를 금지토록 했다.

## 觀光漁港발도도유망한

## 日、道川어항 시설과 기능

### 海外 어 항

동해의 접해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강원도 道川(도천) 어항은 道川(도천) 어항을 중심으로 관광·수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 섬모양의 어항으로 大型魚礁로 增養殖

### 물놀이등 親水기능 괄목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도천 어항은 1994년 11월 25일(금요일)에 개항한다.

## 港灣유지補修예산 一定率반영制度化

###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장관 김관중)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일정률 반영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항만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항만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역 總括額 5%이상 수정때는 無效

### 入札질서 確立 담합 防止策 마련

조달청은 담합방지를 위해 P-Q 공사를 입찰자가 대상을 정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투찰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 와 함께 내역서 총괄액이 5% 이상 수정된 입찰내역은 무효로 처리하고, 무효처리를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3개월간 P-Q 신청 자격을 정지키로 하는 등 내역입찰제를 개선키로 했다.

최근 조달청이 마련한 입찰제에 따르면, 담합방지 대책에 따르면, 상시투찰제의 경우 입찰참가업체나 발주기관 모두에게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입찰자의 대리작성, 대리투찰 등 담합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우선 P-Q대상공사로 적체공사 등 입찰참가대상업체가 한정된 공사에 대해 상시투찰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된 임원의 입찰장의 지명된 좌석에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 제출하게 됐다.

특히 조달청이 입찰집행관이 입찰 당일 입찰장에서 배부한 입찰서만 사용하도록 미리 작성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하고 상시투찰이 금지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입찰제의 적용도 배제키로 했다.

# 最新技術개발로 漁港漁村發展에 寄與하겠습니다

## (株) 世一綜合技術公社

### SE IL ENGINEERING CO., LTD.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1洞 65-106號 中央빌딩 TEL : 831-4411~6 FAX : 831-4417

### 經營陣 및 技術者

- 會長 : 煥旭 宰根 淳求 在錫 馨元 重
- 副社長 : 李朱 李安 李姜 鄭徐 姜徐 尹
- 專務理事 : 李安 李姜 鄭徐 姜徐 尹
- 常務理事 : 李安 李姜 鄭徐 姜徐 尹
- 技術理事 : 李安 李姜 鄭徐 姜徐 尹

# 漁港計劃樹立の要領

[62]

## 野積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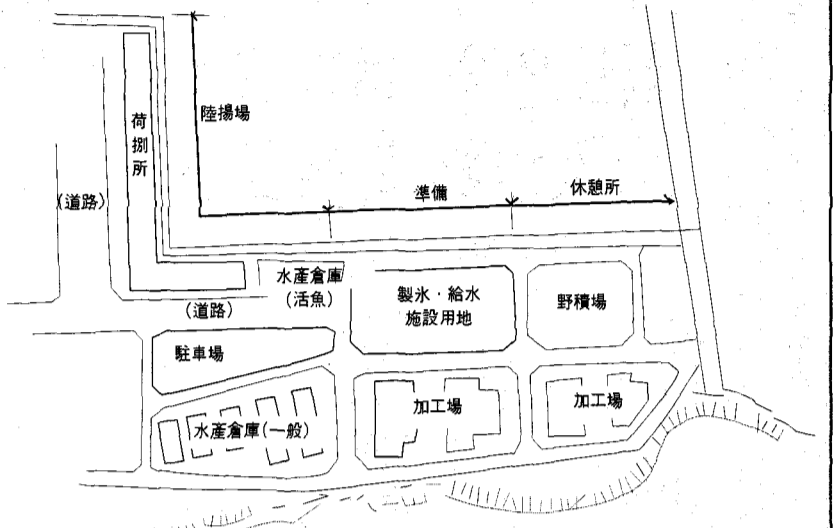


그림1 야적장 배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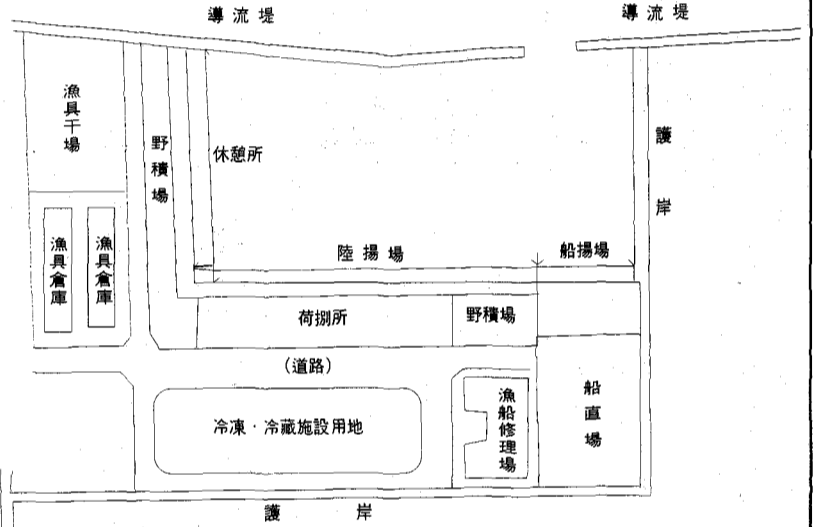


그림2 야적장 배치에

⑥ 어구를 놓는 공간으로서는, 소요 면적의 산정(어구창고용지 참조)을 여기서 간략히 소개하면

$$A_s = \frac{N \times V_p}{S \times \alpha}$$

단, N: 어구의 통수  
 $V_p$ : 1개 통당 어구의 점유면적  
 $S$ : 어구의 가능적재단수  
 $\alpha$ : 점유율 0.5×0.7로 된다.

①~⑥의 역할마다 그 사용시기, 배치장소를 조사, 겸용할 수 있는 것은 겸용을 고려한다.

### 野積場の 配置

야적장은 여러가지 일을 하는 장소로서 타 기능시설과의 관계도 밀접하기 때문에 배치에 있어서는 그 이용목적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어구, 양식자재등을 놓는 장소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후계안벽의 배후에 분류장소의 일시적 면적부족을 보충할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분류장소에 근접한 위치에 배치하는 등 타시설과 일체로 되어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 많다.

배치에 있어서는 그림1, 그림2와 같다.

### (소요면적)

A어항에 있어서는 앞에서 밝힌 산정 방법에 따라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① 다른 시설용지의 면적부족을 보충하는 공간으로서는 당 어항의 표준 1일당 어획량을 50톤으로 하면 분류장소의 소요면적  $A_n$ 은 2,500㎡로 된다.

현재 분류장소 면적  $A_n$ 은 2000㎡이므로

$$부족면적 A1 = A - A_n = 500㎡$$

겨울이 되면 특별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도 차고 건조한 대기로부터 피부가 트고, 거칠어지며 심하면 얼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옷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뭇잎에 의한 자극을 받거나, 때때로 겨울바다의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도 있다. 겨울철 피부관리

## 겨울철 피부관리

차고 건조할 땐 장시간 피부노출피해야



이러한 겨울철 피부관리란, 겨울철의 건조한 피부관리를 위한 것이다. 겨울철에는 각종 피부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겨울철의 건조한 공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 개정된 가족법

### 직계장남이라도 호주승계 포기 가능

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을 비롯한 호주승계인이 그 순서에 따라 호주승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호주승계가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일 호적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신고  
 ○ 입적과 제적은 신고에 의하여 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하는 사람의 본적이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해야 한다. 다만 호주승계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에서, 혼인신고는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주

소지, 현재지에서, 태어인지신고는 인지자의 본적지에서만 가능하다. 또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당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이외에 각 출생지, 사망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도 있다. 신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양식이 있으며 신고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다양하므로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보통 이미 발생된 일을 국가기관에 알려져 호적이란 장부를 정리하게 한다. 이럴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사무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1개월

동안의 신고의무 기간을 두고 있고 이를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호적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인지신고, 복적신고, 입적신고, 일가창립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관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 사생아(혼인외의 자)의 호적취득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혼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을 때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 된다.

○ 동성동본간의 혼인  
 동성동본간에는 원칙적으로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도 받아주지 않는다. 잘못하여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남자가 8촌 이내이면 무효혼인이고 그외의 경우는 당사자나 친척 등이 취소청구를 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아이를 출생하면 취소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신고서 "기타"란에 "시조를 달리한다"는 취지를 적고 족보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생활법률

## 생활법률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호주와 호주승계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직계장남자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의 사유로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이 있고 제적의 사유로는 사망, 이혼, 분가, 호주승계, 국적상실 등이 있다.

제적과 제적부  
 장남이던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